



제426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학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53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윤 의원 등 19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6.
3. 회부연월일 : 2025. 2.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사의 구성을 변경하는 등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2항, 제8조, 제8조의2 신설, 제10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 병원의 정관변경, 이사장의 임명, 감사의 임명, 대학병원장의 임명, 업무의 지도·감독 등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있음. 또한, 대학병원에 대한 성과평가, 병원 당연직 이사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여</u> ----- -----.
제4조(정관) ① (생략)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u>교육부장관의</u>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보건복지부장관</u> ----- -----.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6. (생략) 2. <u>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u> <u>료 요원의 훈련</u>	제8조(사업) ----- -----. 1. (현행과 같음) 2. <u>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과</u> <u>전공의 수련 및</u> -----

현행	개정안
3. ~ 6.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7. (생략) <u><신설></u>	---- 3. ~ 6. (현행과 같음) 7. <u>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연구</u> 8. <u>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u> 9. <u>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임상교수요원 등 의료인력 파견 및 지원</u> 10. (현행 제7호와 같음) 제8조의2(성과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

현행	개정안
제10조(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u>11명</u>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 추천을 받아 <u>교육부장관</u>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u>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u> ③ <u>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u> 제10조(임원) ① ----- -----<u>20명</u>----- -----. ② ----- ----- ----- ----- -----<u>보건복지부장관</u>-----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해당 대학병원의 제16조에 따른 임상교수요원 대표 2명</u> 7. <u>해당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표 2명</u> 8. <u>3년 이상 재직한 해당 대학병원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u>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③ 감사는 이사회를 추천을 받아 <u>교육부장관</u>이 임명한다. ④·⑤ (생략) 제14조(대학병원장) ①·② (생략) ③ 원장은 이사회를 추천을 받아 <u>교육부장관</u>이 임명한다. ④ ~ ⑦ (생략) 제16조(임상교수요원)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u>경력</u>은	<u>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u> <u>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2명</u>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③ ----- --<u>보건복지부장관</u>-----.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대학병원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보건복지부장관</u>-----.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임상교수요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경력 또는 「공</u>

현행	개정안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생략)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u>교육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u>교육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u>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u>----- ----- ---. ④ <u>대학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지역 내 의료기관에 파견하여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 ----- -----<u>보건복지부장관</u>----- ----- -.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 ----- ----- ----- ----- -----<u>보건복지부장관</u>-----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3조(감독) <u>교육부장관</u> 은 대학 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u>보건복지부장관</u> ----- ----- ----- ----- -----.
제25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교육부장관</u> 이 부과·징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보</u> <u>건복지부장관</u> -----.

1. 개요 및 현황

2023년 10월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혁신 전략」 발표에 따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중추 및 의료 혁신 거점 육성을 위해 국립대병원 등의 관리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이른바 “응급실 뽕뽕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로 인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자 하는 시도는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서 시작하였음. 이후 20대, 21대, 22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음.

다만, 개정안은 대다수의 이관법들과는 달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이관만을 규정하고,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또한, 개정안은 소관부처 이관 외에도 성과평가 규정, 이사회 구성 변경, 임상교수요원의 지역 내 의료기관 파견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이관법 발의현황 >

연번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제안일
1	2011542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의원	2018.1.25.
2	2100693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서동용 의원	2020.6.19.
3	212591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2023.12.13.
	212591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91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91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	2126334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주 의원	2024.1.23.
5	212648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 의원	2024.2.2.
	212648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48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48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	2203567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의원	2024.9.3.
	220356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7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7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	220366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의원	2024.9.5.
	220367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7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9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8	220719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2025.1.2.
	220920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이관

가. 법령 개정의 필요성

현행 법령에는 이미 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국립대학병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음.¹⁾ 또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 4개 법률에도 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에 법을 개정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²⁾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책무에 대해서도 규정³⁾하고 있음.

-
-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5.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다. 권역별로 설치·운영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
- 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 7. <생략>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이처럼 현행 법령하에서도 대학병원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기존의 연구⁴⁾는 대학병원에 대한 보건 의료 담당부처의 지도·감독 기전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이관함으로써 대학 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나. 병원의 자율성 훼손 및 병원의 교육, 연구 역량저하 가능성

현재 교육부는 대학병원의 경영에 있어 병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연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위함으로 보임.

반면,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에 따라 대학병원은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 참여와 역할이 확대⁵⁾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현재에 비해 대학병원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정부의 개입 증가는 대학병원의 성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이 있는데,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 성남시의료원의 부실 운영 논란 등 공공의료원에 대한 적자 및 부실운영 논란은 지속적으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역할강화 및 기능재정립」, 2015

5) 각종 보건의료 정책 관련 위원회, 정책 추진 기구 위원 참여, 국책 연구 수행 등

로 발생하고 있음. 즉, 공공의료에서의 역할강화를 위한 대학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은 정부의 공공의료역량 강화에는 기여할 수 있겠으나, 대학병원의 자율성 약화로 인한 성과저하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⁶⁾

다. 결론

이상의 사항을 고려했을 때, 대학병원은 의과대학의 학생, 전공의, 간호 등 의학계 학생들을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고 의학연구를 수행하는 교육기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필수·공공의료기능이 병존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바,⁷⁾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중 어느 부처가 해당 기관의 소관 부처가 될 것인가의 문제는 대학병원의 소관 이관 문제는 대학병원의 역할을 교육과 연구에 우선할 것인지, 공공의료에 우선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라.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는 소관 부처 이관 시 국립대병원에 대한 투자가 보건의료

6) 참고자료1 “2024년 국내 종합병원 순위” 참고

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3의2.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정책과 보다 정합성 있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교육·연구, 진료 기능이 균형있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관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서울대학교는 교육·연구기능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크며, 성급한 소관 변경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현재 체제를 유지하되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3. 대학병원의 사업 범위 확대(안 제8조)

개정안은 대학병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연구,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임상교수요원 등 의료인력 파견 및 지원을 추가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6. (생략) 2. <u>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u> 3. ~ 6. (생략) <u><신설></u>	제8조(사업) ----- -----. 1. (현행과 같음) 2. <u>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전공의 수련 및</u> ----- ----- 3. ~ 6. (현행과 같음) 7. <u>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연구</u>

현행	개정안
<신설>	8.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신설>	9.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임상교수요원 등 의료인력 파견 및 지원
7. (생략)	10. (현행 제7호와 같음)

이는 국립대학병원의 기능 중 공공의료 제공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이는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필수의료혁신 전략」과도 연계되는 측면이 있음. 대학병원의 사업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임.

교육부는 현행 법률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이 명시되어 있어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공공임상교수 파견 등을 이미 추진 중인바 중복소지가 있고, 현재 국립대학병원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역 내 공공기관의 수련과 의료인력 파견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4. 성과평가 실시(안 제8조의2)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이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그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 설>	제8조의2(성과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현재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상 규정된 대학병원에 대한 성과평

가는 존재하지 않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은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므로 동 법에 성과평가를 규정하는 것은 국립대학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현재 타 법령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평가가 다수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과평가 규정은 국립대학병원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현재 타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평가는 다음과 같음.

<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평가⁸⁾ >

평가명	근거법령	주관기관	주기	주요 평가내용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료법 제58조의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4년	환자안전, 진료체계, 조직관리, 성과관리 등 병원 전반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의료법 제3조의5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3년	진료·교육·연구 기능, 인력·시설 기준, 환자구성 등
전문병원 지정평가	-의료법 제3조의6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3년	진료실적, 인력, 시설·장비, 진료의 난이도 등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교육부	1년	경영전략·경영관리, 사회적 책임, 주요사업 관리와 성과, 재무·예산 등
의료질 평가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년	질병·수술별 적정성, 환자경험, 약제 사용, 감염관리 등
수련환경평가 평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4조	대한병원협회	1년	수련병원 지정기준, 수련규칙 이행, 교과과정 제공, 근무시간, 휴직, 당직 등

이상을 고려했을 때, 국립대학병원을 규율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되, 국립대학병원의 평가부담을

8) 이외에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등 다수의 평가가 존재함.

완화하기 위하여 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성과평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이 의료법령에 따른 의료질 평가,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경영평가 등⁹⁾ 각종 평가를 받고 있는바, 별도의 평가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이미 민간병원에 비해 많은 평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평가 신설이 민간병원에 비해 많은 평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1개 국립대병원은 이미 국립대병원이 주요사업에 관한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과평가 신설은 병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평가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병원의 의지를 저하시키고 자율성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로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5. 이사회 구성 변경(안 제10조)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이사의 수를 11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9)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료질 평가', '적정성 평가', '수련환경평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병원 지정평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

임상교수요원 대표 2명, 전공의 대표 2명,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 2명,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당연직 이사로 새로 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0조(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u>11명</u> 과 감사 1명을 둔다.	제10조(임원) ① ----- ----- <u>20명</u> ----- -----.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u>교육부장관</u> 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 ----- <u>보건복지부장관</u>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해당 대학병원의 제16조에 따른 임상교수요원 대표 2명
<신설>	7. 해당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표 2명
<신설>	8.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대학병원 소속 근로자(「근로기준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추천을 받아 <u>교육부장관</u>이 임명한다. ④·⑤ (생략)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2명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③ ----- --<u>보건복지부장관</u>-----. ④·⑤ (현행과 같음)

현재 국립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는 대학병원의 장,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구성¹⁰⁾되어

1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0조(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에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있음.

국립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를 개정안과 같이 범위를 확대할 경우 국립대학병원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유사한 사례로 상장회사의 경우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도록 규정¹¹⁾하고 있으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노동이사를 임명하도록 의무화¹²⁾하였음. 국립대학병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

-
1. 해당 대학병원의 장
 2.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3.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 ③ 감사는 이사회를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 11)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③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 적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¹³⁾도 발의된바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의 수가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노동이사제의 경우도 근로자 대표 1인만을 노동이사로 둘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 2인을 비롯하여 임상교수요원 2인과 전공의 대표 2인도 당연직 이사로 둘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대학병원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이거나 기관과 달리 전공의, 임상교수요원, 간호사, 행정직 등의 이해관계가 다양화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되며, 이사회 내에서는 노동조건, 근무환경 등의 의사결정에서 이해관계가 겹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근로자인 이사를 6명 두게 되므로,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과잉대표될 우려가 있음.

둘째,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1인이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규정하였는데, 우리나라엔 법정 환자단체가 존재하지 않고, 대학병원과 연관된 시민단체의 범위가 매우 넓은바, 이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 보임. 또한, 환자단체도 시민단체의 한 유형이라 볼 수 있으므로, 중복의 문

13) 의안번호 제2203419호,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률에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의 이사 수를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과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사 수의 확대는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제고라는 장점이 있으나,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사회의 구성을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¹⁴⁾하고 있음.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이사 수를 11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이사의 요건을 법에서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자율성과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당연직 이사는 대상자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며 별도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특정 단체의 추천자로 정할 경우 환자단체, 시민단체의 지정 과정, 추천자 선정 과정의 대표성 등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당연직 이사의 요건을 법에서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성) ①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다.

1.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이나 직종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
2.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될 당시 재직 이사의 임기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한정한다.
3. 제2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대학병원의 자율성과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1개 국립대병원은 노조, 전공의,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자율성과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6. 임상교수요원 경력인정 범위 확대 등(안 제16조)

개정안은 임상교수요원이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도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도록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임상교수요원을 지역내 의료기관에 파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임상교수요원) ①·② (생략)	제16조(임상교수요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 ----- ----- ----- ----- ----- <u>경력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u> -----

현행	개정안
<신설> ④ (생략)	----- ---. ④ 대학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지역 내 의료기관에 파견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 동안에도 임상교수요원의 원소속은 대학병원의 임상교수요원인바, 현행 법령 하에서도 임상교수요원의 파견근무 기간도 관련 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임상교수요원이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위해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임상교수요원을 지역 내 의료기관에 파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국립대학병원의 지역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지역”의 범위가 불분명한바, 이를 “대학병원이 소재한 시·도”와 같이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원소속은 대학병원의 임상교수요원이므로 현재에도 파견근무 기간은

관련 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고, 국립대병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지원 없이 임상교수요원을 타 의료기관에 파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대학병원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교육, 연구기능 축소, 진료공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

※참고자료 1 : 2024년 국내 종합병원 순위¹⁵⁾

순위	병원	지역	비고	순위	병원	지역	비고
1	서울아산병원	서울	세계 22위 (전년 29위)	68	강원대병원	춘천시	
2	삼성서울병원	서울	세계 34위 (전년 40위)	69	강릉아산병원	강릉시	
3	세브란스병원	서울	세계 40위 (전년 67위)	70	서울부민병원	서울	순위 상승 71 -> 70
4	서울대병원	서울	세계 43위 (전년 49위)	71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순위 상승 74 -> 71
5	분당서울대병원	성남시	세계 81위 (전년 93위)	72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광역시	순위 상승 73 -> 72
6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세계 94위	73	원광대병원	익산시	
7	서울성모병원	서울	세계 104위	74	동국대일산병원	고양시	
8	아주대병원	수원시	세계 120위	75	삼성창원병원	창원시	순위 상승 79 -> 75
9	인하대병원	인천광역시	순위 상승 13 -> 9	76	김포우리병원	김포시	순위 상승 80 -> 76
10	강북삼성병원	서울		77	예수병원	전주	
11	고려대안암병원	서울	순위 상승 12-> 11	78	분당제생병원	성남시	
12	여의도성모병원	서울		79	은평성모병원	서울	순위 상승 86 -> 79
13	경희의료원	서울	순위 상승 15-> 13	80	대전성모병원	대전	
14	중앙대병원	서울		81	창원파티마병원	창원시	
15	건국대병원	서울	순위 상승 16 -> 15	82	지샘병원	군포시	순위 상승 84 -> 82
16	이화의료원	서울		83	강남차병원	서울	순위 상승 94 -> 83
17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광역시		84	성애병원	서울	순위 상승 88 -> 84
18	화순전남대병원	화순군	순위 상승 41 -> 18	85	제주한라병원	제주시	순위 상승 87 -> 85
19	충남대병원	대전		86	동국대경주병원	경주	순위 상승 92 -> 86
20	영남대병원	대구광역시		87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인천광역시	
21	계명대동산의료원	대구광역시	순위 상승 22 -> 21	88	인천한림병원	인천광역시	순위 상승 93 -> 88
22	전남대병원	광주광역시		89	삼육병원	서울	
23	고려대안산병원	안산시		90	포항성모병원	포항시	순위 상승 96 -> 90
24	인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91	검단탐병원	인천광역시	순위 상승 95 -> 91
25	강동경희대병원	서울		92	부산성모병원	부산시	순위 상승 100 -> 92

26	한림대성심병원	안양시		93	광주기독병원	광주광역시	순위 상승 103 -> 93
27	동탄성심병원	화성시		94	대전선병원	대전	
28	순천향서울병원	서울	순위 상승 31 -> 28	95	청주의료원	청주	순위 상승 98 -> 95
29	부산대병원	부산시		96	유성선병원	대전	순위 상승 107 -> 96
30	경북대병원	대구광역시		97	한일병원	서울	순위 상승 106 -> 97
31	칠곡경북대병원	대구광역시		98	안동병원	안동시	순위 상승 99 -> 98
32	보라매병원	서울	순위 상승 33 -> 32	99	청주성모병원	청주	
33	고려대구로병원	서울	순위 상승 34 -> 33	100	해운대부민병원	부산시	순위 상승 109 -> 100
34	동아대병원	부산시		101	평택굿모닝병원	평택시	순위 상승 110 -> 101
35	전북대병원	전주	순위 상승 37 -> 35	102	대림성모병원	서울	
36	한양대구리병원	구리시	순위 상승 39 -> 36	103	부산의료원	부산시	순위 상승 104 -> 103
37	해운대백병원	부산시		104	순천성가롤로병원	순천시	순위 상승 108 -> 104
38	가천대길병원	인천광역시		105	줄은강안병원	부산시	
39	순천향천안병원	천안시		106	광명성애병원	광명시	순위 상승 112 -> 106
40	양산부산대병원	양산시		107	청주한국병원	청주	순위 상승 114 -> 107
41	분당차병원	성남시	순위 상승 44 -> 41	108	목포시의료원	목포	
42	강남성심병원	서울	순위 상승 43 -> 42	109	동의의료원	부산시	
43	건보공단일산병원	고양시		110	인천사랑병원	인천광역시	순위 상승 117 -> 110
44	울산대병원	울산광역시		111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	순위 상승 119 -> 111
45	단국대병원	천안시		112	나은병원	인천광역시	순위 상승 115 -> 112
46	일산백병원	고양시		113	순천향대구미병원	구미시	순위 상승 120 -> 113
47	한양대병원	서울	순위 상승 51 -> 47	114	구미차병원	구미시	순위 상승 121 -> 114
48	부산백병원	부산시		115	천주성삼병원	대구	

49	가톨릭관동국제 성모병원	인천광역시	순위 상승 53 -> 49	116	좋은삼선병원	부산시	
50	원주세브란스기 독병원	원주	순위 상승 54 -> 50	117	나사렛국제병원	인천광역시	순위 상승 123 -> 117
51	노원을지대병원	서울		118	안양샘병원	안양	순위 상승 126 -> 118
52	충북대병원	청주		119	명지성모병원	서울	순위 상승 125 -> 119
53	제주대병원	제주시	순위 상승 55 -> 53	120	에스포항병원	포항	순위 상승 128 -> 120
54	경상대병원	진주시		121	부산부민병원	부산시	
55	창원경상대병원	창원시		122	계명대대구동산 병원	대구	첫 진입
56	상계백병원	서울	순위 상승 58 -> 56	123	좋은선린병원	포항	순위 상승 132 -> 123
57	부천성모병원	부천시		124	대전보훈병원	대전	첫 진입
58	강동성심병원	서울	순위 상승 61 -> 58	125	대구카톨릭대칠 국가톨릭병원	대구	첫 진입
59	성빈센트병원	수원시	순위 상승 62 -> 59	126	혜인의료재단한 국병원	제주	첫 진입
60	이대목동병원	서울	첫 진입	127	세림병원	인천	첫 진입
61	조선대병원	광주광역시		128	홍익병원	서울	첫 진입
62	고신대복음병원	부산		129	하나종합병원	청주	순위 상승 131 -> 129
63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시	순위 상승 65 -> 63	130	동강병원	울산광역시	
64	한림대한강성심 병원	서울		131	명지병원	고양시	첫 진입
65	순천향부천병원	부천시	순위 상승 70 -> 65	132	목포기독병원	목포시	
66	서울의료원	서울	순위 상승 69 -> 66	133	광주한국병원	광주	첫 진입
67	한림대춘천성심 병원	춘천시		134	좋은선린병원	포항시	

※참고자료 2 : 국립대병원 육성·이관 주요 사항 보고¹⁶⁾

□ 추진 배경

- (지역·필수의료 위기)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심화 ⇨ 의료 이용 편중이 인력·자원의 불균형도 초래하는 악순환

* 지역 내 의료 이용률('21.) : 서울 89.2% vs 충남 66.4%, 경북 63.4%

* 빅5 병원 이용자 중 서울 외 지역환자 비율('20., 심평원)
외래 ('10.) 14.2% → ('20.) 23.7% / 입원 ('10.) 30.9% → ('20.) 36.4%

-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필요) 국립대병원은 의학 교육·연구·진료를 통해 지역 의료의 리더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 (임상) 중증·필수 최종 치료 + (임상 외) 인력 양성·지역병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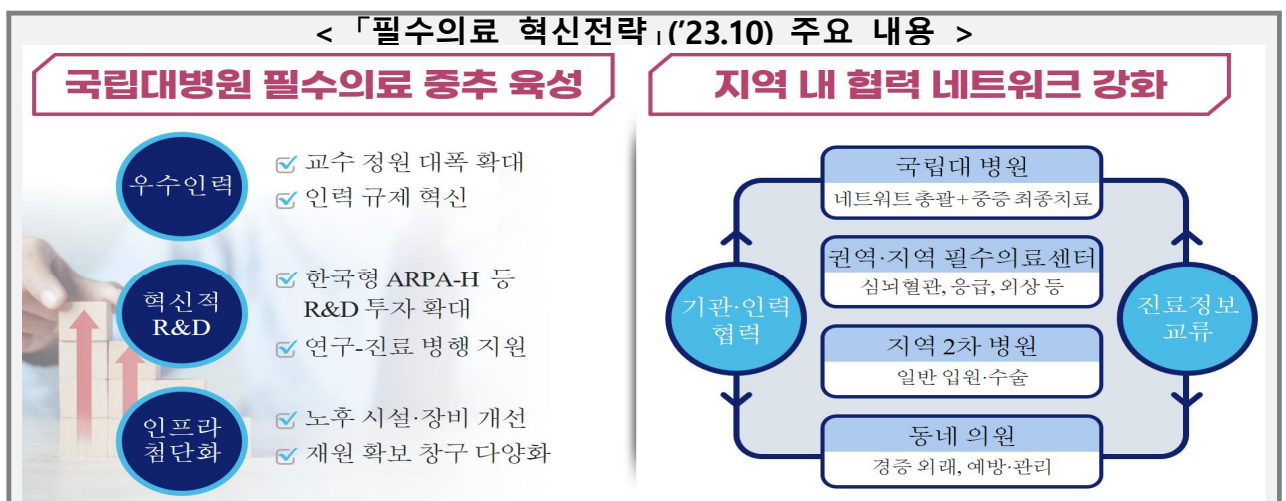
- 투자 미흡*, 규제, 정책 지원체계 취약(전담조직 無) 등으로 인해 인력·인프라 확충 한계 ⇨ 경쟁력 약화 지속

* 국립대병원 지원(교육부) : ('06.) 563억원 → ('23.) 663억원

-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점병원인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임상 역량을 수도권 빅5 수준까지 견인할 정책 및 투자가 시급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관리체계 개편도 필요

※ 국립대병원 교육·연구·임상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하여 지역·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는 정책 방향 발표 ('23.10)

□ 국립대병원 육성 추진현황



16)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❶ (인력확충) 필수의료 분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거점 국립대 의대(9개) 전임교원 1,000명 증원(~'27.)

* 非수도권 의대 임상 전임교수('24.4) : 국립대(9개) 평균 107명 vs 사립대(23개) 평균 249명

❷ (규제 개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의사의 민간과의 보수 격차 완화를 위해 총인건비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10.24)

- 총인건비·정원 등 의료기관과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지속 추진(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 검토 등)

❸ (연구)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계속}, 지역 국립대병원 연구 인프라 확충 지원^{신규} 등 국립대병원 관련 R&D 투자 확대

❹ (인프라 첨단화)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역량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 수술실 등 관련 인프라 재정투자 착수('25.~)

*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 '25.정부안 815억원, 지방비 포함 시 1,624억원
(자부담 : 75%(교육부) → 20%(복지부))

□ 이관 입법안

○ (발의 현황) 김민전 의원(9.3), 장종태 의원(9.5) 발의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치과병원 설치법」 4개 법 개정안

○ (주요 내용) 現 관리체계 기본 틀은 유지하되, 1)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 2)운영비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 마련

* 김민전 의원안에는 설립목적 조항에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 보장” 문구 추가

○ 입법 시급 추진 필요성

① (민간-수도권과 격차↑)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전보) 등을 통해 ▲중별 적합 기능 강화 ▲협력 활성화 중심의 의료체계 확립 추진 중이나

- 국립대병원은 지원체계 변경이 없다면 수도권 대형병원*과의 격차 확대 필연적 (* 전문의 중심 구조로 전환을 위해 인력 등 투자 중)

② (교육부 지원 한계) 국립대병원은 대학과는 별도 법인이며 정부 지원은 小*, 母재단·대학의 지원 받을 수 있는 민간병원 대비 열악

* 국립대학병원 의료수익 대비 국고지원 비율('22.) : 0.94%

- 전공의 부재 속에서 국립대병원의 어려움 가중되는 상황이나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대상으로 가용한 정책 수단은 제한적

* 국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 대비 진료량 회복율 약 10%p 낮음(2월 1주차-10월 5주차 비교)

③ (국립대병원 현안 산적) 지역 內 신뢰도·위상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은 ^노후병원 신축*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추진 중

* ▶ 전남대병원 예타 조사 진행 중 ▶ 부산대병원 본관 신축 예타 신청 등

** 제주·강원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희망 중, 특히 도내 상급종합병원 없는 제주는 도 주요 관심현안

- 의료 이해도·전문성 갖춘 복지부가 병원의 현안 해결 지원해야
하나 이관 없이는 국립대병원에 대해 포괄적 투자·지원 불가능

□ 이관 관련 부정적 견해에 대한 검토

① (국립대병원 설립 취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고유 미션으로,

- 의학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국립
대병원의 설립 취지와 일치

- 특히, 현행 法상 국립대병원의 사업, 책무 등이 복지부 관장 사항이
며 사업의 대부분이 복지부 단독 소관*인만큼

* ▲전공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임상연구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등

· 국립대병원의 미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관이 필요함

※ (고려 필요사례) 보육은 아동·돌봄정책(복지부), 유아교육정책(교육부)
업무 이원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 업무 총괄 부처인 교육부로 이관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주요 조항과 보건복지부 미션·업무 상관성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을 ---의학 등에 관한 <u>교육·연구와 진 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u>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 주무부처 로서 <u>국민건강 증진이 고유 미션이자 업무임</u>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3의2.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① 「전공의법」 제1조 :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u>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u>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조 : 이 법은 ---<u>보건의료인력의 --- 우수인력 양성</u>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u>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u>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조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u>보건신기술의 인증</u>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u>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u>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 :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 <u>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u>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교육·연구-진료 상관성) 의학 교육·연구와 진료는 매우 밀접

- 해외 유수의 병원들이 탁월한 임상 역량을 바탕으로 의학 교육·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들 고려 시, 진료 강화가 교육·연구 기능 약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 2024년 뉴스위크 평가 글로벌 병원 랭킹 1위를 차지한 Mayo Clinic은 중증·고난도 환자 중심으로 年 130만명 진료 ⇨ 진료 결과인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기능도 활성화되어 年 1.4조원 규모의 R&D 편당 확보

- 美 대학병원들은 보건부 산하 NIH(국립보건연구원), CMS(건강보험센터) 등과 밀접한 협력관계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건부처로의 이관으로 의학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된다는 주장은 설득력 낮음
- 또한, 복지부의 월등한 보건의료 R&D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관된다면 병원의 연구기능은 활성화 될 것이라는 판단이 합리적

	보건복지부		교육부
R&D 예산 (’25.정부안)	9,927억원	vs	5,958억원
지원 분야	보건의료 분야 집중지원		전체 이공계 분산
특성	병원 연구 진흥(연구중심병원 등), 중개, 임상 및 융복합 연구(데이터·AI 등)		이공계 인력양성에 집중

참고1

국립대병원 이관 전후 비교표

◆ 소관 이관에도 국립대학과 국립대병원간의 관계는 기존과 동일하며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국립대병원 경쟁력 제고와 국립대의 동반성장 견인

	현행	이관 후	관계부처 협의사항
설치 근거법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국립치과대병원, 서울대치과대병원 등 4개 설치법 체계	현행 유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 완료
병원 이사회	국립대 총장 당연직 이사장		
병원장 임명권자	서울대병원 : 대통령, 他 국립대병원 : 장관		
대학 재산	대학이 병원 부지 소유·관리		
직원 연금	사학연금 적용 특례		
인력 처우	20년 가까이 전임교원 정원 동결 (예. 경북대병원 '02년 113명 → '23년 119명)	의과대학 소속 전임교원 정원 확대 + 병원 소속 임상교수 지원 강화	전임교원 증원(1,000명+α) 행안부·기재부 협의 완료
총인건비 규제	총인건비·정원 규제 적용 → 우수인력 확보 애로	국립대병원의 총인건비·정원 자율성 강화 * KAIST 공공기관 지정 해제 사례 참고	협의 완료 ('25년 공운위 논의 예정) * 부처 관리체계 마련 중
진료·경영	행위별 수가 적용, 필수분야 만성 적자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국립대병원 중심 성과 기반 수가체제로 전환
인프라	시설·장비 확충 국고 지원을 25% 국립대병원(10개) 지원 : 1,114억원 vs 국립암센터 지원 ^{복지부} : 843억원	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 최우선순위로 설정	빅5 수준의 인프라 첨단화 확충 지원
R&D 투자	국가 R&D 中 국립대병원 지원 규모 1% 미만 * '21년 기준 국가 R&D 27.4조 원 중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은 1,189억원	국립대병원 특화 R&D 기획·투자	연구·교육⇄임상 선순환 구조 확립 * ARPA-H 9년간 약 1.2조원 투자 등
부처내 전담조직	X	설치 예정	-

① 의학 교육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지원

< (참고) 의사 양성체계 >				
예과 (2년)	본과 (4년)		전공의 (4~5년)	
교양과목	1~2학년	3~4학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의학 강의 (대학)	임상실습 (대학<병원)	실기 수련	전문과목 전속 수련

- 임상실습은 의사 양성을 위한 예비 과정*으로 병원의 역할이 중요

* 예) 서울대 의대는 본과 4학년 2학기를 ‘학생인턴’ 과정으로 운용

- 의료 관련 전문성 갖춘 복지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인프라와 커리큘럼 운영 관련 투자 추진하여 임상실습 여건 개선

- 또한, 전공의 수련은 복지부 고유 업무

- 이관을 통해 국립대병원은 수련 관련 보다 체계적인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증·고난도 필수의료 전문의 양성 강화

② 연구 투자 강화 ⇨ 바이오헬스 고부가가치 성과 창출

- 의학 교육은 연구 역량과 매우 밀접*하기에 병원의 임상·중개 연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중요

* 연구 투자 확대 → 우수인력 유입&연구성과 창출 →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학 교육 퀄리티 상승

- 복지부는 R&D 법령·제도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많은 보건의료 R&D 예산을 투자 중인 만큼 국립대병원에 대한 전폭적 투자 가능

* '24년 R&D 예산 7,884억원 ⇨ '25년 9,396억원 투자 예정 (전년 대비 +19.1%)

- 의과학자 등 진료-연구 병행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 계획

- 또한, 병원의 연구 결과물이 신약, 치료법 개발 등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관련 정책자원 풍부한 복지부의 지원 필요